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9월 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윤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9월 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지원대상 확대(안 제5조제5호, 제6호).
- 2) 저장강박 의심가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신설(안 제6조제4호, 제5호).
- 3)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, 가구 특성·생활실태 조사 실시 신설(안제6조의2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개정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및 실태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

2) 주요 내용

가) 지원대상 확대(안 제5조제5호, 제6호).

- 「기초연금법」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

나) 저장강박 의심가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신설(안 제6조제4호, 제5호).

다)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, 가구 특성·생활실태 조사 실시 신설(안제6조의2).

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실태 조사 등을 신설하여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